

[별표 3] <개정 2011.12.30>

산정항목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산정항목	
1. 사회복지	가. 노인복지비
	나. 장애인복지비
	다. 아동복지비
	라. 그 밖의 복지비
2. 문화관광	가. 문화재비
	나. 문화관광비
	다. 공공도서관비
3. 농림수산	가. 농업비
	나. 농촌진흥비
	다. 임업비
	라. 수산업비
4. 공공근로	공공근로비
5. 여성인력개발	여성인력개발비